

[사 건 명] 행심 2014-23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9.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 5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서면사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9.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는 인천○○고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2014. 9. 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청구인은 2014. 9. 25.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특별교육 5일, 학부모 동반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4. 10. 20.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4. 12.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라고 말한 것은 인정하나, ‘○○’라는 말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청구인 역시 ‘○○’를 그냥 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가 포함하는 내용과 의미를 모르고 한 청구인의 말은 학폭법에서 정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7교시 이후 교무실에서 피해학생 어머니로부터 십여 차례 물리적 폭력을 당했고, 이 사건 발생 후 피해학생에게 사과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발생 당일 피해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청구인이 물리적 폭행을 당하였으나 이로써 청구인의 징계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다.

나. 피해학생은 남성적인 외모로 학년초부터 힘들어 하였고, ‘○○’가 ‘○○○○○○’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행위는 학폭법에서 정의하는 언어폭력(모욕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4. 9. 16. 5교시 수학수업 후 쉬는 시간에 청구 외 □□□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라고 큰소리로 이야기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야기한 것

이기는 하나, 평소 □□□와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며, 다른 학생으로부터 ‘○○’ 라는 말을 전해들었고, □□□는 학년초부터 남성적인 외모로 힘들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말로 인하여 □□□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폭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해학생에 대하여 단 1회 ‘○○’ 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유·무형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어서 청구인이 행사한 학교폭력에 고의성이나 지속성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일 피해학생의 부모님을 만나 사과를 전하고, 청구인의 보호자도 화해를 위하여 노력했으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보호자들 간의 사과가 전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학생은 이전부터 외모 문제로 힘들어해 왔다고 하는데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청구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치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 특히 학교 내 봉사는 기한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학폭법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1호 처분(서면사과), 3호 처분(학교 내 봉사), 5호 처분(특별교육 5일)을 병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인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특별교육 5일』의 행정처분을 『서면사과』로 감경하여 처분한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폭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